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63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민형배 · 문정복 · 정준호

이개호 · 김문수 · 안도걸

최혁진 · 양부남 · 이성운

조계원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 중 “매년”을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면에 의한 기본권교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기본권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의 인권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정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면 기본권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기본권 교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생략)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u>
<u><신설></u>	<u>5.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에 관한 사항</u>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u>매년</u>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 ----- ----- ----- ----- ----- ---- <u>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매년</u> ----- ----. <u>다만,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면에 의한 기본권교육이 어렵</u>

② ~ ⑤ (생략)	<u>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u> <u>방식을 통한 기본권교육을 할</u> <u>수 있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	--